



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직생애 주기교육 도입(안) 보고



도입 필요성

- 공직자의 청렴의식 내면화를 위해서는 공직생애주기(Life-cycle)를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 필요
- 우리공사의 청렴도 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내부직원의 청렴의식 제고가 선결과제로 공직생애 주기(입사 ⇒ 승진 ⇒ 고위직)교육 도입 필요
- ※ 공직생애 주기교육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반영했는지 여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도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지표

공직생애 주기교육 이수제도 지침(국권위 청렴교육과-544, 2012. 2. 27)

주요내용

- 공직 신규임용부터 승진, 고위직 진입 등 전환단계별 청렴교육 이수 제도를 도입하여 청렴한 공직관 정립
 - ▶ 신규임용】 공직자 행동강령 등 초심자용 소양교육, 교육 후 청렴서약
 - ※ 임용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
 - ▶ 승진예정】 승진에 반영되는 교육시간 중 일정시간을 청렴교육 반영
 - ※ 청렴교육을 부처지정학습으로 운영, 필수이수과목(5시간)에 포함
 - ▶ 고위직진입】 청렴리더십 및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함양
 - ※ 고위직 진입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
- ⇒ 청렴교육 이수제도 도입여부를 ‘반부패 경쟁력 평가’에 반영

주기별 세부이수 내용 : 붙임참조

우리公社 도입(안)

● **공직생애 주기별 세부교육 내용(안)**

구 분	신규임용자	승진예정자	고위직진입자
교육목표	청렴을 내면화하여 청렴초심을 유지	승진 후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공직에 몰입	사회 지도층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유지
대 상	신규 입사자	3급(팀장)⇒2급(부서장)	임원
이 수 시 간	5시간 이상 (임용 후 1년 이내)	5시간 이상 (승진 전·후 1년 이내)	4시간 이상 (임용 1년 이내)
교육내용	공직자의 기본자세, 행동강령 주요내용 등	주요 부패사례, 윤리적 갈등상황 및 대처방안 등	노블레스 오블리주 제고, 이해충돌상황 대처법 등
	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실적(무료강의 등) 인정		
교육방법	사이버교육(자체, 국민권익위, 중앙공무원교육원), 집합교육(국민권익위 등) 등		

● **관련 규정 도입(안)**

- 관련규정 : 경기도시공사행동강령규정시행세칙
- 도 입(안)

현 행	도 입(안)
제29조(교육)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 방지와 행동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	제29조(교육) ①사장은 교육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과 행동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· 시행하도록 한다.
②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	②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또한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≪참고사항 : NH공사 공직생애 주기교육 규정도입 내용≫

- 관련규정 : 한국토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
- 규정내용

제32조(교육)① 사장은 교육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· 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· 관리하도록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시 이 이 강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. 또한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.

향후조치

● 사규심의회 부의

붙임 : 공직생애 주기별 세부 청렴교육 이수내용

공직생애 주기별 세부 청렴교육 이수내용

1 신규임용자 청렴교육 이수

- 교육대상 : 각급 공공기관 신규임용자
 - 공공기관은 해당기관에 신규임용된 공직자가 임용된 때부터 1년 이내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 마련
 - ※ 신규임용의 범위는 계약직, 공개채용, 특채, 수시채용 등 임용형식과 무관하게 각급 기관에 신규로 채용된 전 공직자에게 적용
- 교육분야 : 공직자 행동강령, 기관별 부패취약 업무에 대한 초임 공직자 대응방안, 공직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 등
- 교육방법 : 기관장 및 감사담당관 특별교육, 교육훈련기관(자체운영, 공무원교육원, 청렴교육관 등)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
 - ※ 신규자 기본교육과정에 청렴과목을 일정시간 반영
- 교육시간 : 임용 후 1년 이내 연 5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를 권장
 - ※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실적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며 기관특성에 따라 교육시간 자율운영 가능

2 승진예정자 청렴교육 이수

- 교육대상 : 각급 공공기관의 승진예정자
 - 각급 공공기관은 승진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청렴교육이 일정시간 이상 포함되도록 운영
 -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은 이수해야 하는 학점에 청렴교육을

일정시간 이상 포함

※ 적용 범위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

기 관	청렴교육 이수제 적용 승진예정자 범위 (예시)
중앙행정기관	4급 승진예정자 및 5급 승진예정자
광역시(교육청 포함)	5급 승진예정자
기초자치단체	5급 승진예정자
공직유관단체	부장급 승진예정자

- **교육분야** : 공직자 행동강령, 중간관리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 및 역할, 주요 부패사례 및 슬기로운 대처법 등

※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, 반부패 국제동향 포함

- **교육방법** : 기관장 및 감사담당관 특별교육, 교육훈련기관(자체운영, 공무원교육원, 청렴교육관 등)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

- **교육시간** : 승진 전 5시간 이상의 교육이수를 권장

※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실적(무료강의 등)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며 기관 특성에 따라 교육시간 자율운영 가능

3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

- **교육대상** : 각급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

- 고위직의 범위는 <예시>를 참조하여, 각급 기관의 직위수준 및 특성에 따라 확대 운영 가능하며 **기관장은 반드시 포함**

<예시> 기관유형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범위

기관 유형	고위공직자 범위
중앙행정기관	▪ 심의관급 이상 (고위공무원단)
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	▪ 과장급 이상 (보직보유자)
공직유관단체	▪ 임원

- **교육분야** : 노블레스 오블리주 함양, 공직자의 사회적 공헌, 청렴리더십 확립 등

※ 청렴사적지 방문, 청렴관련 강연, 저서 발간 및 자원봉사 실적 등 인정

- **교육방법** : 기관장 특별교육, 교육훈련기관(공무원교육원, 청렴교육관 등)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

※ 고위공직자 기본교육과정(고위정책과정)에 청렴과목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거나 청렴교육관 「고위공직자 청렴과정」 활용

- **교육시간** : 고위직 진입 후 1년 이내 연 5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권장

※ 반부패경쟁력 평가에 해당지표 반영

<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실적>

. (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자 수 / 고위공직자 총수) × 100

반영률	배 점	반영률	배 점
100%	10	40% 이하	2
80~100%	8	실적없음	0
60~80%	6		
40~60%	4		

※ 고위 공직자 범위(기관 직제상)

- 중앙행정기관 : 심의관급 이상(보직 보유자)
- 지방자치단체 : 과장급 이상(보직 보유자)
- 시 도 교육청 : 국 공립 일선학교 교장
- 공직유관단체 : 기관장 및 임원